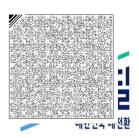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(DMF)해설서 제5개정판(민원인 안내서) 개정 알림

- 1.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연계 품질심사 등을 반영한 '원료의약품 등록 제도(DMF) 해설서 제5개정판(민원인 안내서)'를 붙임과 같이 발간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아울러 유관 협회에서는 동 민원인 안내서가 관련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, 동 안내서는 우리 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'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'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붙임.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(DMF)해설서 제5개정판(민원인 안내서) 1부. 끝.



수신자 본부(49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3개 전부서), 식품의회,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1개 전부서)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

주무관 **시무관 채주영** 관 **이수정**

협조자

시행 허가총괄담당관-2661 (2020. 12. 2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325 팩스번호 043-719-2300 / healtop2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